

법률 번역에서 DIY 코퍼스 활용사례 - 한국 법령문의 사동사 번역을 중심으로

유 정 주
(이화여대)

1. 문제의 제기

법률 텍스트는 ‘법 언어(language of the law)’라는 특수 언어의 하위 분야로, 법률가와 비법률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배제한 전문가 사이의 특수목적 의사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률 텍스트는 기능면으로는 규제성과 처방성, 형식면으로는 사실-상황(fact-situation)과 법의 진술(statement of law)을 특징으로 하는 고유한 텍스트성을 지닌 특수목적 텍스트로 분류되어 왔다. 특수목적 텍스트는 특별한 구문, 의미, 화용상 규칙의 지배를 받는 특수 언어 또는 하위 언어¹⁾로 구성되어 있는데(Sager 1994), 법률 텍

1) 하위 언어(sublanguage)란 자연언어의 특수한 유형을 연구하기 위한 근거로서 발전된 개념으로 제한된 주제, 어휘·통사·의미론적 제약, 비표준적 문법규칙, 비정상적 텍스트 구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주로 과학연구 설명, 의료기록, 항공

스트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법계(legal families) 별, 국가 별로 고유한 하위 언어가 엄격하게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intent)를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양쪽에 사용되는 하위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번역가가 이러한 하위 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번역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 자원들(documentary resources)로는 법률용어사전, Westlaw나 LexisNexis 등의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 SDL Trados 등의 컴퓨터보조번역도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용어의 사용 맥락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거나 주로 법률가들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번역가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자원의 하나로 코퍼스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코퍼스기반 연구 방법은 전문가 그룹의 담화분석에 있어 내성법이나 관찰법보다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eze 2011: 95). 따라서 법률 번역에서 코퍼스를 활용할 경우 법률가들의 실제 담화 맥락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통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번역 텍스트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 사이에서 코퍼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번역 방법은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코퍼스 구축과 분석에 필요한 기법의 보급문제, 이런 기법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는 대규모 번역 코퍼스의 부재와 같은 코퍼스 활용의 일반적 어려움 외에도, 신뢰할만한 법률 텍스트만을 따로 모아놓은 전문 코퍼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 개인이 이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이창수 2011: 319).

정비교본 등 특수목적 텍스트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유석훈 옮김 1999: 166-167).

- 2) 한국에서 법률 텍스트 코퍼스가 편찬된 사례로는 한국어의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 특성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의 장르와 문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편찬된 고려대학교 한국어 장르코퍼스(KGenre Corpus)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코퍼스로 편찬된 법률 텍스트(법조문, 판결문)의 수가 10건(총 어절 수 11,300)에 불과한 소규모 코퍼스이기 때문에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코퍼스 소프트웨어인 안트콘크를 이용해 직접 DIY 코퍼스(ad hoc corpus, disposable corpus)를 편찬하고, 이를 한국 법령문의 사동사(causative verbs) 번역어 분석에 활용해 봄으로써,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을 위한 코퍼스 활용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 사례로 선택한 ‘-시키-’ 사동과 ‘-게 하-’ 사동은 법령문에서 법적 행위를 규정하는 핵심 표현 중 하나로 법령문의 특성상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현재 이에 대한 영문 번역어로는 ‘have’, ‘let’, ‘make’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번역가들이 기존의 문서자원들을 통해 그 일반적 의미와 법적 의미 간 차이를 면밀히 구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6년 발간된 현행 미국 연방법전(U. S. C.)을 DIY 코퍼스로 편찬하여 그 사용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이를 통해 번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서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법률 번역에서 코퍼스의 활용

법률 텍스트는 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목적 텍스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Cao 2007: 85). 법률 텍스트의 주제와 언어는 복잡하고 매우 전문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번역가는 언어능력은 물론 원천-목표 법체계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용어들의 내재적 불일치를 고려할 때 원천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가어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에 가깝다. 다국어 용어집(term bank), 전자사전, 다국어 지식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보조수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률 용어의 등가어는 단순한 마우스 클릭만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 번역가는 비교 법학자와 마찬가지로 원천 법체계에서 사용된 특정 개념이 목표 텍스트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Šarčević 2012: 195). 법률 텍스트의 번역가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적 정보에는 텍스트의 미시구조와 관련된 어휘적·문법적 요소뿐 아니라, 텍스트의 거시구조와 관련된 스타일, 장르, 포맷 요

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률 텍스트는 내용(전문지식)과 형식(전문 표현 또는 용어 단위)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가 필요로 사실정보와 언어정보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Varantola 2003: 59). 법률 분야에는 Findlaw, Westlaw, LexisNexis 등 세계 각국의 법령, 판례, 저널 등을 윈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어, 번역가의 경우에도 법률가와 마찬가지로 번역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법률가들을 위한 사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등가어, 문법적 언어, 어휘적 언어 등의 언어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유료로 운영되어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번역가들의 경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번역본이 원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나 EU 등의 경우, 번역가들의 용도에 맞게 법률용어의 법적 개념을 비교하거나 언어적 용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법률자료들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³⁾ 그러나 자르체비치(Šarčević 1997: 237)는 번역가들이 기능적 등가어(functional equivalents)의 등가 정도에 대한 신뢰할만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검색을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법학자나 용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자료 검

3) 수백 명의 상근 및 재택 번역가들이 법률문서를 비롯한 전문적인 번역텍스트들을 생산하고 있는 EU 기관들의 경우 문서 간 통일성 보장을 위해, 또는 번역과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서자원도구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인터넷의 본격적 등장 이전에 도입된 Eurodicautm, TIS, EUTERPE 등의 원시적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컴퓨터보조번역에 관한 EU 기관 공동 회의(JIAMCATT)’의 감독 아래 편찬된 기관 간 공동 용어 코퍼스 구축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초기의 노력이 주로 CD-ROM 형태의 용어 사전 편찬에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는 완성된 원천텍스트-목표텍스트 전체를 병렬코퍼스 형태로 구축한 전문텍스트 데이터베이스(full-text database)가 폭넓게 활용되는 추세다. 여기에는 모든 EU법령 및 판례에 대한 11개 공식 언어의 병렬텍스트로 구성된 CELEX와 조약, 공식저널, 현행 법령, 준비단계 법령(preparatory acts) 등으로 구성된 Eur-Lex 등이 포함된다(Wagner, Bech & Martínez 2002: 88-90). EU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전문텍스트 코퍼스들은 병렬 텍스트 형태이긴 하지만, 이를 영어에 한정된 단일어 코퍼스로 활용할 경우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에게 훌륭한 문서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색을 위한 시간의 부족은 물론이고, 소수의 법률용어사전 등을 제외하면 번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서자원 자체가 드문 상황이다. 또한 법학자들이나 용어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번역가가 직접 번역 목적의 문서자원을 검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가와 용어전문가의 역할을 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퍼스 소프트웨어는 한국 법률 번역가들의 등가어 탐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문서자원이 될 수 있다. 유럽의 법률 번역가들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문서자원의 하나로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⁴⁾ 이는 GENTT 리서치그룹이 스페인의 법률 번역가 54명을 포함한 총 90명의 전문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2009년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표1 참조). 코퍼스를 통해 찾고자 하는 정보의 정류를 묻는 질문에는 용어 및 어법, 전문 주제 지식, 문법측면, 텍스트 산출 맥락, 텍스트 구성, 격식성 정도 등 다양한 답변이 도출되었다.

(표1) 전문 번역가들이 참조하는 문서자원에 대한 GENTT 리서치그룹 설문 결과
(García-Izquierdo & Conde 2012: 145)

(단위: %)	디지털/가상현실			아날로그/대면/非디지털			합계
	법률	의료	기술	법률	의료	기술	
이중어 사전	90.7	88.9	94.4	81.5	88.9	83.3	527.7
단일어 사전	90.7	94.4	94.4	74.1	88.9	83.3	525.8
매뉴얼 및 개념 관련 문서	42.6	83.3	77.8	50	77.8	66.7	398.2
용어 데이터베이스	75.9	88.9	88.9	18.5	27.8	27.8	327.8
시소러스	35.2	72.2	66.7	22.2	38.9	33.3	268.5

- 4) 유럽의 법률 번역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코퍼스들은 다음과 같다.
-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편찬한 2,000만 단어 규모의 법학교재 및 신문기사로 구성된 Cambridge Corpus of Legal English
 - EC 지침서와 판결문으로 구성된 볼로냐 대학의 Bononia Legal Corpus(BoLC)
 - 계약서로 구성된 COMET 코퍼스
 - 1674년부터 1913년까지의 20만 건의 소송 관련 문서들로 이루어진 런던 중앙형사 재판소(Central Criminal Court)의 Old Bailey 코퍼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어 법률코퍼스인 Acquis Communautaire(AC)

코퍼스 또는 텍스트 묶음	75.9	77.8	66.7	18.5	16.7	11.1	266.7
번역가 커뮤니티	70.4	72.2	88.9	1.9	0.0	5.6	239.0
전문가 커뮤니티	57.4	88.9	66.7	5.6	0.0	11.1	229.7
번역 메모리	48.1	66.7	83.3	9.3	0.0	5.6	213.0

특히 전문 번역가들은 번역 과정에서 코퍼스 구축 및 활용 시 단순한 용어 및 어법 차원이 아닌, 특정 단어의 어역과 관련된 충분한 맥락 정보를 참조할 수 있기를 원했다(Ibid. 147). 이는 현재 전문 번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코퍼스가 대부분 원천 텍스트-목표 텍스트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 형태라는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병렬 코퍼스는 일반적으로 번역 등가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조준형 2012: 224), 전문 번역 과정에서 목표 언어로 구성된 단일어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은 병렬 코퍼스나 시소러스(thesaurus), 용어집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법률 번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비교 코퍼스나 병렬 코퍼스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일어 코퍼스는 법률 텍스트의 장르 관습을 탐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법률 코퍼스는 기밀유지라는 법률 문서의 특성상 접근성이 높은 법령(legislation)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접근이 어려운 사적 영역의 법률 및 소송 문서들의 경우 소규모 샘플로만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행은 법률 분야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법령중심주의(legicentrism)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iel 2009: 4). 한국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는 L2 번역가들의 경우, 법령의 구성 비율이 높은 대규모 코퍼스를 단일어 코퍼스로 삼아 원천 용어의 개념과 ‘가장 근접한 자연스러운 등가어(closest natural equivalent)’ 탐색에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언어의 분석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보다는 장르에 기반한 소규모 코퍼스의 활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바샤, 랭톤과 링(Bhatia, Langton & Lung 2004: 212, Biel 2009: 6에서 재인용)의 견해에 근거할 때, 실제 법률 번역 과정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편찬되는 코퍼스는 법률 텍스트의 유형별로 구축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3. DIY 코퍼스 편찬 및 활용 사례

3.1. 미국 연방법전 코퍼스 편찬

DIY 코퍼스(ad hoc corpus, disposable corpus)란 통상적으로 특정 텍스트의 번역 보조를 목적으로 단일 번역 과업을 위해 수집된 코퍼스를 의미한다. 이때의 번역이란 원천 텍스트의 실제 번역을 의미하는 동시에 목표 언어로의 텍스트 설계, 텍스트 산출을 의미하며, 목표 언어로 된 관련성 높은 비교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번역된 텍스트를 수정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Varantola 2003: 55). DIY 코퍼스는 이렇게 하나의 번역과업을 위해 특화되어 편찬된 코퍼스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특성을 지니며,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형태소 분석이나 품사 태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면서도 번역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다. DIY 코퍼스는 전문 번역 과정에서 사실 정보, 언어적 정보, 장르 특수적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번역교육 도구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문 번역사들에게 유용한 문서도구가 될 수 있다(Sánchez-Gijón 2009; Zanettin 2002). DIY 코퍼스 편찬을 위한 텍스트 추출원으로는 크게 번역 의뢰인, 전문센터, 인터넷 등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산체즈 기준(Sánchez-Gijón 2009: 113-1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지나친 정보량으로 인한 인지적 과부하, 품질에 대한 신뢰성, 체계적인 데이터 추출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퍼스의 편찬 기준 및 설계과정에 대한 엄격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오키프, 맥카시, 카터(O’Keefe, McCarthy & Carter 2007)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코퍼스 편찬 절차를 참고하였다.

〔표2〕 오키프, 맥카시, 카터의 코퍼스 편찬 절차

O'Keeffe, McCarthy & Carter (2007)
1. 코퍼스 설계원칙(design rationale)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는 텍스트 유형 선정 • 해당 텍스트 유형에서 수집할 텍스트의 양 결정
2. 텍스트 입력 (Input tex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저작권 문제 고려) • 수집된 텍스트를 'plain text' 파일로 변환 • 코퍼스 소프트웨어(AntConc, WordSmith Tools 등) 이용
3. 데이터베이스화 (Database tex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퍼스에 포함된 개별 텍스트의 기본 정보(작성자, 장르, 단어 수 등) 저장

첫째, 코퍼스 설계원칙과 관련하여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 추출을 위해 한정된(finite)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법률 번역의 경우 코퍼스로 편찬되는 텍스트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체계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텍스트의 선정은 번역의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법령에 나타나는 사동사의 영문 번역어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비교 코퍼스로 기능할 DIY 코퍼스는 계약서, 판결문, 소송 관련 문서 등 다양한 법률 텍스트 가운데서도 동일 유형의 텍스트에 속하는 법령(legislation)으로만 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법률 번역가들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일일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거나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plain text' 또는 'XML' 형태로 코퍼스가 구축되어 있는 영문 법령을 검색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text' 포맷으로 구축된 미국 연방법전(U. S. C.)과, EU 법령과 ECJ 판결문 등으로 구성된 'XML' 형태의 Acquis Communautaire(AC)를 고려하였다. 그 중 EU 법령 텍스트를 모아놓은 AC의 경우,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라는 점 외에도 EU 법령의 근간이 대륙법이라는 점과 다른 언어에서 재 번역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위한 코퍼스 편찬에서 제외하였다. 필립(Philip 1999: 3)은 EU의 판결이 구현되는 것은 국내법 차원이므로,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의 법체제인 보통법은 EU 법령에 구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륙법 체제인 대

한민국 법령을 보통법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독자층을 가정하고 영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비교 코퍼스로 삼을만한 TL 코퍼스는 EU 법령 텍스트보다는 미국 연방법 텍스트가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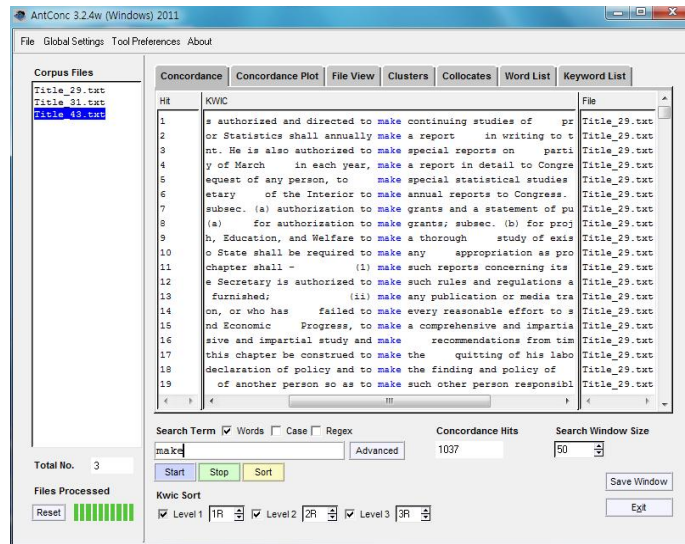
둘째, 텍스트 입력 단계에서는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협회사무국(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의 법률정보검색사이트(<http://uscode.house.gov/download/ascii.shtml>)에서 제공하는 2006년판 현행 미국 연방법전⁵⁾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았다. 연방법전 텍스트 파일은 기본법(organic law)과 50개의 편(title) 별로 각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plain text' 포맷으로 제공되므로 따로 변환작업이 필요 없으며, 공개된 법령이므로 저작권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총 텍스트 파일 수는 기본법 텍스트 1개와 각 50개 편에 대한 텍스트 50개, 그리고 텍스트 용량 상 두 개로 분할해 놓은 5, 11, 18, 28, 50편에 대한 5a, 11a, 18a, 28a, 50a를 합쳐 56개로, 이는 41,778,268 단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수 코퍼스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단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의견(Pearson 1998)과, 분야 또는 장르가 제한적이므로 포함된 텍스트 간 동질성(homogeneity)만 확보된다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정미애 2007, 신창원 2012에서 재인용) 등이 있다. 대부분의 법률 코퍼스는 AC와 같은 초대형 다국어 코퍼스를 제외하고는, 기밀유지조항 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다른 특수 코퍼스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Biel 2009: 4). 바사, 랭톤과 링(ibid.)은 법 언어, 특히 법령의 경우 보수적 언어사용(conservatism)과 공식화된 형태-기능 간 상관관계로 인해 대규모 코퍼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의 법령을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피어슨(Pearson 1998)의 견해에 따라 100만 단어 규모의 코퍼스를 편찬하기로 하고, 연방법전 텍스트 가운데 29편(Labor), 31편(Money and Finance), 43편(Public Lands)에 해당하는 3개의 텍스트(총 1,751,375단어)를 최종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도구인 코퍼스 소프트웨어로는 무료 어구색인 프로그램인 AntConc 3.2.4w

5) 미국의 대표적인 주제별 법전인 U. S. C.(United States Codes)는 50개의 편(Titl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6년마다 하원의 법률개정협회사무국(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에 의해 발간된다. 미국연방정부 인쇄국(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에 따르면 출력물기준으로 총 20만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를 개발자인 로렌스 앤서니(Laurence Anthony)의 개인 홈페이지(<http://www.antlab.sci.waseda.ac.jp/software.html>)에서 다운받았다⁶⁾.

셋째, 텍스트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한 개별 텍스트의 기본 정보 입력의 경우, 상기 사이트에서 이미 편 별로 나누어 제목을 붙여 놓았고, 여러 장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르별 제목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림1]은 이렇게 편찬된 DIY 코퍼스에서 ‘make’를 중심으로 콘코던스 라인을 추출한 화면이다.

(그림1) DIY 코퍼스에서 ‘make’의 콘코던스 라인을 추출한 화면



6) AntConc는 무료이고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콘코던싱을 비롯해 코퍼스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콘코던스 라인을 그래픽으로 바꾸어 주는 콘코던스 플롯, 특정 단어와 관계없이 개수에 따른 단어묶음을 보여주는 N-그램, 타겟 텍스트에서 콜로케이트를 추출해주는 콜로케이트 도구, 타겟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워드 리스트, 타겟 텍스트와 레퍼런스 코퍼스에서 만들어지는 워드 리스트를 비교해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는 키워드 리스트 등을 들 수 있다(권혁승&정채관, 2012).

3.2. 분석 대상 텍스트

DIY 코퍼스로 편찬한 미국 연방법전에 나타난 사동사의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 법령에 나타나는 사동사의 번역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텍스트를 먼저 선정하였다. 대상 텍스트로는 특정 법령을 택하는 대신, 2009년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법령용어한영사전」 제 2판을 선정하였다. 「법령용어한영사전」은 1997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간행 및 보급해 온 「대한민국영문법령집」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법령용어의 영문표현을 간단히 찾을 수 있는 책자 발간 요구에 부응하고 영문법령집 영역작업의 표준화를 기하고자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발간한 「영문법령표준용어집」의 개정·증보판이다. 총 929페이지 규모의 「법령용어한영사전」은 초판 발간 이후 제·개정된 현행 법령에 포함된 주요 용어 및 용례가 모두 실려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법령 영역과정에서 절대적인 규범(norm)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모집단 전체(대한민국영문법령 텍스트 1,200건)에 대한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한 표본 텍스트 코퍼스(sample-text corpus)⁷⁾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본 텍스트 코퍼스는 전문 텍스트(full text)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추출한 전문 텍스트로 구성되거나, 전문 텍스트에서 추출된 특정 크기의 표본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안동환 역 2010: 41), 「법령용어한영사전」의 용례 편에 추출된 텍스트들은 해당 법령의 전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에 해당한다. 현재 「법령용어한영사전」은 디지털 포맷이 아닌 종이 형식으로만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법령용어한영사전」에 등장하는 사동사의 사용 빈도와 언어 유형을 수작업으로 각각 추출하였다.

3.3. 법령문 사동사의 분석 기준

7) 안동환 역(2010: 41)은 표본텍스트 코퍼스는 담화의 전체 모집단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모집단이 반드시 ‘그 언어 전체’인 것은 아니므로, 한 언어의 특정한 표본이 방대한 양의 언어를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믿음의 행위(an act of faith)’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령문의 경우 일반 텍스트와는 달리 조문의 형식, 어휘, 용어가 서로 유사하며 이전 번역문, 즉 ‘전례’가 중요한 번역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법령용어한영사전에 제시된 용례들은 1,200건의 법령 번역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법령문의 사동사(causative verbs)는 법적 규칙(legal rules)의 네 가지 요소인 법적 주체, 법적 행위, 상황, 조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법적 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 쿼드(Coode 1843, Šarčević 1997: 137에서 재인용)는 의무, 권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법적 행위(legal action)를 ‘그 자체로 법령의 전체 기능이 수행되고 발현되는 요소’로 규정한다. 법적 행위는 실질 조항(substantive provisions)에서 주로 의무, 허가, 인가, 금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Šarčević 1997: 133), 한국 법령의 사동사는 실질 조항에서 이 모든 형태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사동구문은 형태적, 의미적 특성 및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어휘적 사동(lexical causatives), 형태적 사동(morphological causatives), 통사적 사동(syntactic causatives)으로 분류될 수 있다(Comrie 1981).

[표3] Comrie(1981)의 사동구문 분류

구분	특성	해당 동사
어휘적 사동 (lexical causatives)	원인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과 결과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의 동사에 두 사건이 동시에 표현되는 사동	burn, sell, roll, break, open, close, split, empty, melt, raise, stop, kill, destroy 등
형태적 사동 (morphological causatives)	사동이 원동사와 접사, 일치(cross-referencing) 등의 형태론적 방법에 의해 실현됨	-ate: invalidate, liberate en-: endanger, enlarge -fy: justify, purify -ize: centralize, harmonize
분석적/통사적 사동 (analytic/syntactic causatives)	‘원인’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통사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make, let, have, get, cause, bring it about 등

이에 반해 한국어의 사동구문은 사동접미사 ‘-이’로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과 ‘-게 하-’로 나타나는 통사적 사동, 독립적 사동 유형인 ‘(-)시키-’사동, ‘보내다’, ‘사육하다’ 등의 어휘적 사동으로 분류된다(김성주 2003: 78). 한국 법령문의 경우에도 ‘-이’ 사동, ‘-게 하-’ 사동, ‘(-)시키-’사동, 어휘적 사동이 모두 나타나지만, ‘-이’ 사동과 어휘적 사동의 경우 영어로 번역될 때 어휘적 사동이

나 형태적 사동으로 제각기 번역되는 반면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을 번역할 때는 모두 전통 문법에서 사동사로 분류되는 ‘let’, ‘have’, ‘make’, ‘cause’, ‘require’ 등을 사용한 통사적 사동으로 번역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동과 어휘적 사동은 [알리다: inform], [보내다: send]처럼 대개 등가를 이루는 영문 대응어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have’, ‘make’, ‘let’, ‘cause’ 등의 사동사 선택과 관련해 겪게 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법령문의 대표적인 사동 유형으로, 번역가들이 의사결정상 어려움을 겪는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British National Corpus(BNC)를 이용해 ‘make’ 사동구문을 분석한 케머(Kemmer 2001)의 연구, ICE-GB와 BNC, ICLE를 이용해 ‘get’, ‘have’, ‘make’ 등의 사동사를 분석한 길퀸(Gilquin 2003, 2010)의 연구 등에서 중요한 유형구분 기준으로 사용된 사동주-피사동주의 유정성⁸⁾ 보다는, 빈도수와 연어(collocation)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했다. 전문 텍스트 생산자들의 어휘 선택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전문 분야 내에 형성되어 있는 암묵적 합의(tacit consensus)는 물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어역(register)과 같은 폭넓은 고려사항들에 의해 좌우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단어가 특정 맥락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 즉 사용 빈도(frequency)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Breeze 2011: 95). 그러나 빈도만으로는 단어 출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개별적인 단어의 정확한 용법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용례를 이용하면 단어/어형과 그것이

8) 법령문에 나타나는 사동구문의 경우 법적 주체(legal subject)인 사동주는 법인(legal person)으로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나 권한이 부여된 인(人) 또는 자(者)를 의미하기 때문에(Coode 1843, Šarčević 1997: 136에서 재인용), 유정물이 아니더라도 법적 행위를 일으키는(bring about) 의지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피사동주 역시 행동주 이면서 동시에 사동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나 권한을 부여받는 대상이므로, 무정물이라 하더라도 의지적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문의 사동구문 분석에서는 일반 영어의 사동구문 연구에 적용되는 유정성 기준이 아닌, 보다 세분화된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트로스보그(Trosborg 1997: 108)는 법령문의 규제 행위와 관련한 주어 분석에서 사람명사, 집합명사, 법적 추상어(legal abstract), 법적 구체어(legal concrete), 법령문의 조건, 대명사 등을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사용된 환경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단어를 중심으로 한 통사와 의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강범모 2011: 87). 특히 언어는 일반 용어의 개념 범주(concept boundaries)를 결정하는데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평가되므로(Philip 1999: 5), 언어를 위주로 한 용례를 통해 사동사의 구체적인 사용 맥락을 살펴보고자 했다. 싱클레어(Sinclair 1991: 170)의 경우, 언어를 ‘텍스트 내의 좁은 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공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 때 ‘좁은 공간’의 범위를 중심어를 기준으로 좌우로 각각 최대 다섯 단어까지로 설정한다. 그러나 길퀸(2003: 139-140)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코퍼스를 이용한 사동사 분석의 경우 직접적인 언어(straightforward collocations)를 추출하기 어려우며, 데이터의 산발성(sparseness)으로 인해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⁹⁾. 또한 언어는 구조상의 불규칙성 때문에 일반적인 통사규칙이나 의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학자들마다 정의와 유형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테파노비치(Stefanowitsch 2002)의 사동 분류를 기본 틀로 삼아 문법적 언어의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유표적으로 드러나는 어휘적 언어 또한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¹⁰⁾.

3.4. 법령용어한영사전의 사동 번역어 분석

스테파노비치(2002)는 [사동사+명사구+(to)부정사] 형태는 결과가 사건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사건유발사동, [사동사+명사구+형용사/분사] 형태는 결과가 상태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상태유발사동으로 분류하였다(홍기선 2003: 149에서 재인용). 스테파노비치의 분류에 따라 「법령용어한영사전」 제 2 판에서 ‘-게 하

9) 길퀸(2003: 139-142)은 사동사 get과 have의 언어분석을 위해 중심어가 속한 문장 전체에서 다양한 힌트(clue)를 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get에 대한 길퀸의 언어 분석 예이다.

Wherever the ventilation slots are located and however well the designers have protected the fan and provided for hot air to be expelled, with enough ingenuity it will always be possible for the inventive user to thwart the design, stifle the ventilation and get the machine to malfunction. <ICEGB: W2B-033#16:1>

10) 문법적 언어(grammatical collocation)와 어휘적 언어(lexical collocation)의 구분은 유형별 언어구분의 대표적 연구로 손꼽히는 벤슨 등(Benson et al. 1997)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 사동과 '(-)시키-' 사동을 중심으로 사동주-피사동주의 유정성과 관계없이 사동구문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영문 번역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법령용어한영사전」제 2 판의 '-게 하-', '-시키-' 사동의 영문 번역어 빈도수

	let	make	have	cause	require
사건유발사동 (resulting-event causation): 사동사 + 명사구(NP)+ (to)부정사	5	4	45	2	3
상태유발사동 (resulting-state causation): 사동사 + 명사구(NP) + 형용사/분사	0	3	2	0	0
합계	5	7	47	2	3

'let'의 경우, 대상 텍스트에 사용된 5건 모두 사건유발사동으로, 모두 통사적 사동구문인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 예문 (1), (2)와 같다.

(1)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If there is a third person whose right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the outcome of a litigation, the court, upon a request of the party or the third person or ex officio, may by decision let the third person intervene in the litigation. (법제처 2009: 217)

(2)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Any suspect to be disciplined may appoint a legal counsel or a person of learning or experience as a special counsel and let him/her present a supplementary statement on the case in question or submit any evidence. (법제처 2009: 361)

'make'의 경우, [make it accessible], [make it available], [make it hard]와 같이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가 3건(예문(3) 참조), 사건유발사동으로 사

용된 경우는 4건이었다(예문(4) 참조). 상태유발사동과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 모두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로, 국문상의 변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If the head of a Si/Gun publish a zone development plan and make it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for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법제처 2009: 43)

(4) 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Committee may investigate a fact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co-owners or interested parties, may require applicants and the interested parties to submit any necessary documents, and make public officials of the pertinent authority investigate a fact if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for a deliberation. (법제처 2009: 251)

‘have’의 경우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는 [have a thing exhibited], [have such documents exhibited]의 2건이었고(예문(6) 참조), 예문(5)와 같이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는 총 45건으로 압도적인 빈도수를 나타냈다.

(5) 해양경찰청장은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Maritime Policy Agency may designate those persons who are deemed capable of performing the duties of certification of oil pollution contingency plans and have them perform the said duties on his/her behalf. (법제처 2009: 25)

(6)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hall, when approving a fundamental urban plan, send relevant documents to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ny other Metropolitan City Mayor or the head of a Si/Gun concerned, who, in turn, shall immediately make a public announcement and have such documents exhibited to the general public for inspection. (법제처 2009: 43)

‘cause’의 경우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는 아래 예문(7), (8)의 2건으로 나타났다.

(7)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No person shall remove propert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r cause such properties to be removed to foreign countries or to the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for the purpose of the flight of such properties. (법제처 2009: 109)

(8) 먹는 샘물·수 처리제 및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¹¹⁾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false or exaggerated indications and advertisements with respect to the name, manufacturing method, and quality of drinking spring water, water treatment chemicals, water purifiers, and their containers and packing shall be allowed nor shall indications and advertisements that may cause persons to confuse them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be allowed. (법제처 2009: 451)

‘require’의 경우 [사동사 + 명사구 + to부정사] 형태의 사건유발사동 형태로 사용된 경우는 7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4건은 예문(9)와 같이 ‘요구하다’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며 ‘-게 하-’ 사동과 ‘(-)시키-’사동의 번역어로 사용된 경우는 총 3건이었다(예문(10) 참조).

11) ‘-게 하-’ 사동은 학자들에 따라 ‘-하다’ 사동문으로 지칭되기도 한다(홍기선 2003: 156).

(9)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담보의 보충이나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A credit management officer shall,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ntract, require a debtor to provide security or to have any other person stand surety for securing a credit, and require, if necessary, any other additional security, or the replacement of the surety or provided security. (법제처 2009: 101)

(10)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The court may require an administrator appointed by the court to furnish reasonable security for the management and return of the property. (법제처 2009: 101)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한민국법령에 나타나는 대표적 사동구문인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영문 번역어로는 ‘have’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let’과 ‘make’가 그 다음 순위로, 또한 빈도수는 낮지만 ‘require’과 ‘cause’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have’의 경우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으며, ‘make’의 경우는 사건유발사동이나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령 번역가들이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영문 번역어로 ‘have’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영문법령 텍스트의 공동제작 방식과 법률 번역 특유의 ‘전례(precedents)’ 중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영어가 모국어 가 아닌 L2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을 번역하면서 어떤 경우에 ‘have’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make’를 사용하며, 또 ‘require’나 ‘cause’를 사용할 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¹²⁾. 특히, 한국의 법령 번역가들의 경우 코퍼스나 용어 데이터베이스 등 다

12) 특히 ‘have’와 ‘make’의 경우 ‘get’, ‘do’, ‘keep’ 등과 함께 대표적인 ‘탈어휘 동사(delexical verbs)’로 분류된다. 이러한 탈어휘 동사는 다른 어휘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기는 하나 동사 자체의 뜻보다는 뒤에 결합되는 단어에 의해 뜻이 결정되는 동사로, 영어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갖는 연어유형으로 알려져 있다(송선화 외

양한 문서자원 도구를 활용해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료 번역가들이 이미 번역한 법령문에서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립된(established) 어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법률 번역의 관행과 법령문 간의 형식적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따라 하기’에 대한 용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분석대상 텍스트로 사용한 「법령용어한영사전」의 경우 한국의 법령 영역 과정에서 거의 유일한 규범으로 사용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번역가들이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을 번역할 때 동 텍스트를 참고해 ‘have’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번역어 선택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사전을 통해 ‘have’, ‘let’, ‘make’, ‘require’, ‘cause’의 의미장(semantic fields)을 추출하고, 편찬된 DIY 코퍼스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 빈도와 연어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3.5. 사전을 통한 사동사의 의미 분석

사전과 코퍼스는 중복되는 도구가 아니라 보완적인 도구로, 번역과정에서 코퍼스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을 통한 의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Varantola 2003: 60). 특히 법률 번역에서 특정 용어의 등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법적 개념 파악은 정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Šarčević 1997: 239), 사전을 통해 용어의 개념 특성을 추출해 내는 것은 기능적 등가어 판단을 위한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어 법률사전은 용어의 내포 의미(intension)를 구성하는 특징만을 나열하고, 외연(extension)은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만을 통한 개념 특성 파악은 위험할 수 있다(ibid.). 따라서 사전 검색을 통해 용어의 내포 의미를 파악하고, 코퍼스를 활용해 구체적인 사용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해당 용어의 외연을 파악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유의미한 조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사동사의 사전적 정의 파악을 위해 ‘have’, ‘let’, ‘make’, ‘require’, ‘cause’의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와 Black’s Law Dictionary를 이용해 각각 살펴보았다.

2011: 224-225).

〔표5〕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2nd Ed. revised, 2005)의 사동사 정의

have	(with obj. and infinitive) tell or arrange for (someone) to do something for one
make	(with obj. and infinitive) compel (someone) to do something
let	(with obj. and infinitive) not prevent or forbid; allow
require	(with obj. and infinitive) (of someone in authority) instruct or expect (someone) to do something
cause	(with obj. and infinitive) make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bad) happen

국문 법령의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로는 ‘have’, ‘let’, ‘make’, ‘require’, ‘cause’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이들 사동사의 일반적 의미는 각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et’은 뚜렷한 ‘허가’의 의미가 있고, ‘have’가 비교적 포괄적인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cause’는 사동주의 의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된다는 의미가, ‘make’는 ‘강요’의 의미가 두드러졌다. 또한 ‘require’는 사동주의 권위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동주의 ‘사회적 힘’을 특징으로 하는 유도적 사동구문¹³⁾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의성(monosemy)이 특징인 정밀과학의 용어와는 달리, 법률 용어의 경우 중의성(polysemy)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Šarčević 1997: 231), 법률 용어 전문사전을 통해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13) 케머(Kemmer 2001)는 유도적 사동의 경우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사람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동과 비교할 때 사동주가 미치는 영향이 물리적이기 보다는 사회적 힘(social force)일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홍기선 2003: 147에서 재인용).

[표6] Black's Law Dictionary(6th Ed. 1990)의 사동사 정의

have	“to keep,” “to hold in possession,” “to own,” “to bear (children)”
make	① to cause to exist; ② to form, fashion, or produce; ③ To do, perform, or execute; ④ To execute as one's act or obligation; ④ To cause to happen by one's neglect or omission; as to make default
let	(in the imperative) imports a positive direction or command
require	To direct, order, demand, instruct, command, claim, compel, request, need, exact. To ask for authoritatively or imperatively.
cause	To be the cause or occasion of; to effect as an agent; to bring about; to bring into existence; to make to induce; to compel

대표적인 법률용어사전인 Black's Law Dictionary를 살펴본 결과,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를 정의한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have’의 경우 사동의 의미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¹⁴⁾ 주로 소유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make’는 포괄적인 사동의 의미도 있지만 태만이나 부작위로 인한 부정적인 상태유발사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let’의 경우 ‘긍정적인 지시나 명령’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허가’의 의미와 유사하며, ‘cause’는 행위주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거나 개입되는 경우에 모두 사용가능한 포괄적인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require’는 권위에 의한 요청이나 명령의 의미가 강했다. 상기에서 살펴본 ‘have’, ‘let’, ‘make’, ‘require’, ‘cause’의 일상적인 의미와 법적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7]과 같다.

14) Black's Law Dictionary와 함께 대표적인 법률용어사전으로 손꼽히는 Dictionary of Modern Legal Usage (2nd Ed. 2001)의 경우에도 ‘have’ 항목에는 소유의 의미와 관련된 ‘have and hold’라는 이중어(doublet)가 제시되어 있을 뿐, 사동의 의미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동사 ‘have’에 법적인 사동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have’가 전적으로 법적 의미만을 갖는 전문 어휘(purely technical term)나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구분된 준 전문 어휘(semi-technical term)가 아닌 일상 어휘(everyday vocabulary)에 속하는 단어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Alcaraz Varó & Hughes 2002: 154-165).

(표7) 사동사의 일상적인 의미와 법적 의미

	일상적 의미	법적 의미
have	포괄적 사동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음
make	강요	포괄적 사동/부정적 사동
let	허가	허가
require	(권위에 의한) 지시/기대	(권위에 의한) 요청/명령
cause	(부정적) 간접적 사동	포괄적 사동/간접적 사동

사동사의 법적 의미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법률 시소러스를 이용하여 의미장을 추출한 결과(표8 참조), ‘have’는 여기서도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let’은 ‘permit’, ‘allow’, ‘authorize’와 같은 ‘허가’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과 유사한 의미군으로 분류되는 반면, ‘make’는 ‘bring about’이나 ‘bring forth’, ‘bring to effect’와 같은 포괄적 사동의 의미와 ‘bring into existence’, ‘carry into existence’ ‘call into being’과 같은 상태유발사동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require’와 ‘cause’인데, 이들은 동일 의미군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힘에 의해 공식적으로 의무를 부과(impose, levy, enforce, obligate, oblige, subject, prescribe, summon, tax)하는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Legal Thesaurus (2nd Ed. 1992)를 통한 사동사의 의미장 추출

have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음
make	accomplish, achieve, actualize, assemble, attain, author, beget, bring about, bring forth, bring into being, bring into existence, bring to effect, bring to pass, build, call into being, call into existence, carry into effect, carry into execution,
let	(permit), verb: affranchise, allow, approve, assent, authorize, certify, commission, concede, concenter, consent, empower, enable, endorse, enfranchise, entitle, entrust, favor, franchise, give leave, give permission, grant, have no objection, indulge, liberate, license, make possible, oblige, pati, privilege, release, sanction, sinere, suffer, support, tolerate, vouchsafe, warrant, yield

require	(compel), verb: assess, call for, cause, coerce, command, constrain, decree, demand, dictate, direct, draft, drive, enact, enforce, enjoin, entail, exact, exigere, force, impose, insist on, issue a command, levy, make, necessitate, obligate, oblige, ordain, order, poscere, postulate, prescribe, requisition, subject, summon, tax
cause	be responsible, be the author of, breed, bring, bring about, bring into existence, compel, conduce to, contribute to, evoke, generate, give occasion for, give rise to, induce, influence, initiate, lead to, prompt, provoke

법률용어사전과 법률시소러스를 통해 법적 의미를 탐색한 결과, 일단 국문 법령의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로 ‘have’를 사용하는 것은 사동사 ‘have’의 법적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let’의 경우는 국문에서 명백한 ‘허가’의 의미가 아닌 ‘-게 하다’의 번역어로 사용하기에는 법적 의미와의 격차가 있었다. ‘make’는 포괄적인 사동의 의미로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법적 으로 명백한 상태유발사동의 의미를 가지므로 사동사 뒤의 비정형 절이 수동구 문일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require’의 경우 권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 주체인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의 사동문 번역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ause’의 경우 법적 의미 모두 포괄적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require’와 동일 의미장으로 분류되므로, 일단 법령문의 사동문 번역어로 사용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3.6. DIY 코퍼스를 통한 사동사의 사용맥락 분석

사전과 시소러스를 통해 위와 같이 사동사의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사전 검색 결과만 가지고 사동사 번역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기 사전 검색 결과에서 보듯,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 간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have’와 같은 일상 어휘의 경우에는 사전만을 활용해 정확한 의미 탐색을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각 사동사들의 의미 경계(semantic boundaries)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위주로 한 구체적인 단어의 사용맥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

표 언어로 된 동일 장르의 코퍼스를 통해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와 연어를 살펴보기 위해 편찬된 DIY 코퍼스를 분석해 보았다¹⁵⁾.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법령용어한영사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테파노비치의 분류에 따라 사동주-피사동주의 유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have’, ‘let’, ‘make’, ‘require’, ‘cause’가 [사동사+명사구+(to)부정사] 형태의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와 [사동사+명사구+형용사/분사] 형태의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have’, ‘let’, ‘make’, ‘require’, ‘cause’의 출현 빈도수는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났다.

[표9] DIY 코퍼스의 ‘have’, ‘let’, ‘make’, ‘require’, ‘cause’의 출현 빈도수

	let	make	have	cause	require
사건유발사동 (resulting-event causation): 사동사 + 명사구(NP) + (to)부정사	0	2	15	115	139
상태유발사동 (resulting-state causation): 사동사 + 명사구(NP) + 형용사/분사	0	149	31	0	0
합계	0	151	46	115	139

1) ‘let’의 출현 빈도수 및 연어유형

‘let’의 경우, 출현 빈도수는 총 3회로 예문(11)과 같이 모두 ‘contract’를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동사로 사용된 경우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11) Upon the determination that any irrigation project is practicable,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may cause to be **let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ame. <DIY corpus: Title_43>

15) 단어의 사용빈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와일드카드세팅을 사용하여 let의 경우 let*, make의 경우 mak*와 made를, have의 경우 have, has, had, having을, cause의 경우 caus*를, require의 경우 requir*를 중심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let, make, have, cause, require만을 중심으로 하였다.

2) ‘make’의 출현 빈도수 및 언어유형

‘make’의 경우, 총 출현 빈도수는 1,037회로 이중에서 ‘payments, recommendations’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동으로 사용된 빈도수는 151회였다. 이 가운데 149회는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되었는데, [make+명사구+형용사] 형태의 경우가 144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make+명사구+분사] 형태는 5회였다.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는 예문(13)을 포함해 단 2회에 불과했다¹⁶⁾. 특기할만한 것은 ‘make’ 사동문의 대부분이 [make+명사구+available]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예문(12) 참조). 144건의 [make+명사구+형용사] 형태 가운데 ‘available’을 목적보어로 취하는 형태는 무려 118건에 달했다. 이는 ‘make’가 상태유발사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전 검색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make’를 한국 법령의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 번역어로 선택할 경우 ‘available’ 등 정형화된 표현을 중심으로 형용사/분사를 목적보어로 취하는 상태유발사동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의 예문(3), (4)와 같이 한국 법령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서류, 계획 등을) 공람시키다, 공람하게 하다’ 사동의 경우 현재와 같이 ‘have’로 번역하는 대신, 예문(12)와 같이 ‘make publicly available’로 표현하는 것이 TL의 언어 관습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DIY 코퍼스에서 사동사 ‘make’와 함께 나타나는 결합어들의 유형과 빈도수, 비율을 정리하면 [표10]과 같다.

16) 길퀸(2010: 273)은 BNC와 ICLE를 이용해 사동사 ‘make’를 분석한 결과 ‘make’는 주로 ‘feel’, ‘laugh’, ‘think’, ‘happen’, ‘cry’, ‘grow’ 등의 동사를 보어로 취해 피사동주의 의지(will)와 상관없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함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예: Advertising makes people think that smoking is okay.). 또한 [make+명사구+분사] 언어 형태로 사용될 때는 채귀대명사나 주어에 대한 명사구 공지시어(NP co-referential)와 함께 ‘known’, ‘felt’, ‘understood’ 등과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예: The child was having difficulty in making herself understood).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 법령문의 대표적인 사동 형태로 사동주와 피사동주 모두의 의지가 관여되는 유도적 사동(inductive causation)에 대한 번역어로 ‘make’를 선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2)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submit to Congress and **make publicly available** o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ebsite a report on the inventories submitted. <DIY corpus: Title_31>

(13) Act August 12, 1955, amended subsection. (a) generally to **make subsection conform to** new procedure applicable to Puerto Rico and Virgin Islands. <DIY corpus: Title_29>

[표10] 사동사 'make'의 연어유형

유형		빈도	비율
1. make + NP + adjective	make + NP + *available	118	78.14%
	make + NP + adjective	26	17.21%
2. make + NP + past participle		5	3.31%
3. make + NP + infinitive		2	1.32%
합계		151	100%

3) 'have'의 출현 빈도수 및 연어유형

'have'의 경우, 총 출현 빈도수는 1,804회로 이중에서 'power, authority, access, jurisdiction, effect, right, responsibility'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 'have occurred, have violated, have designated, have been omitted, have been established' 등 [have + 과거분사]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동으로 출현한 빈도는 총 46회였다. 이 가운데 [have+명사구+분사] 형태의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가 31회였고, [have+명사구+원형부정사]의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는 15회였다. 앞서 분석한 「법령용어한영사전」의 경우, 'have'가 대부분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과 달리 DIY 코퍼스 분석 결과는 상태유발사동으로 출현한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⁷⁾(예문(14) 참조).

17) 이러한 결과는 구어체 637,682 단어, 문어체 423,581 단어, 총 1,061,263개 단어로 이루어진 ICE-GB(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에 나타난 'have'의 비정형보어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동사 'have'가 법률 텍스트와 일반텍스트 모두에서 주로 과거분사 보어를 수반하는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

(14) the Corporation may, upon request, have such public land included in its selection and considered by the Secretary to be withdrawn and properly selected. <DIY corpus: Title_43>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have’가 사건유발사동으로 출현한 15건 가운데서는 예문(15)와 같이 [have provisions(subparagraph) apply]의 형태가 절반이 넘는 8건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나머지 7건 중 3건도 [have the employer(sponsor) make payments/contributions] 유형으로 사용되는 유표적 특징을 보였다(예문(16) 참조). 그러나 [have provisions(subparagraph) apply]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의 경우(예문(17) 참조)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have’를 한국 법령문의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것을 오역이라 볼 수는 없다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15) The plan sponsor of a plan may elect to have this subparagraph apply to not more than 2 eligible plan years with respect to the plan, <DIY corpus: Title_29>

(16) a participant may elect to have the plan sponsor make payments as contributions under the plan, <DIY corpus: Title_29>

(17) the President may make, or have the Secretary of State make a certificate of the amount extended if the President decides the amount is not to be accounted for specifically. <DIY corpus: Title_31>

그러나 사건유발사동보다는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 빈도가 훨씬 높다는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11] ICE-GB에 나타난 have의 세 가지 보어 유형 빈도수(Gilquin 2003: 133)

부정사(Infinitive)	10 (13%)
과거분사(past participle)	55(71.4%)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	12(15.6%)
합계	77(100%)

점,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된 경우도 [have provisions(subparagraph) apply] 연어 유형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ave’를 대부분 사건유발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법령 영역 관행은 재고가 필요해 보였다. 상기에서 논의한 DIY 코퍼스에서 사동사 ‘have’와 함께 나타나는 결합어들의 유형과 빈도수, 비율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사동사 ‘have’의 연어 유형

유형		빈도	비율
1. have + NP + past participle		31	67.39%
2. have + NP + infinitive	have + *provisions + *apply	8	17.39%
	have + employer(sponsor) + make payments/ contributions	3	6.52%
	have + agency + carry out	2	4.34%
	have + representative + present	1	2.17%
	have + Secretary of State + make a certificate	1	2.17%
합계		46	100%

4) ‘cause’의 출현 빈도수 및 연어유형

‘cause’의 출현 빈도수는 총 291회로 이중에서 ‘cause of action, reasonable cause, similar cause, good cause, just cause’ 등 명사로 사용된 경우와 ‘cause difficulty, cause death, cause disruption’ 등 명사를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cause’가 사동으로 출현한 빈도는 115회였다. 이 가운데 ‘cause’가 취하는 비정형보어가 능동형인 경우가 34회였고(예문(19) 참조), [cause+명사구+to be p.p/cause+to be p.p+명사구]형태의 수동형 보어를 취한 경우가 81회였다(예문(18) 참조). 앞서 분석한 「법령용어한영사전」의 경우, ‘cause’가 사동 번역어로 사용된 경우가 사건유발사동의 단 2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DIY 코퍼스에서는 포괄적의미의 사동으로 사용된 경우가 ‘have’보다 3배 가까이 많이 관찰되었다.¹⁸⁾ 특히 ‘cause’가 수동형 보어를 취하는 경우 중

18) 참고로 BNC와 ICLE를 분석한 길권(2010: 274)의 연구에서 사동사들의 출현빈도는 구어(speech)의 경우 get>make>have>cause 순이었고, 문어(writing)의 경우는

에서는 예문(18)과 같이 ‘cause notice(complaint, a copy of bylaws) to be published’, ‘cause notice(a demand, complaint) to be served’ 연어유형의 사용이 두드러졌다(총 15회). 이를 통해 볼 때, ‘cause’는 SL 관습상 ‘notice, complaint’ 등과 더불어 ‘고시·공고·송달·송부되도록 하다’의 공시(connotations)를 갖는다는 것과, 대체로 능동형 보어와 수동형 보어를 모두 취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사동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표13]은 DIY 코퍼스에서 사동사 ‘cause’와 함께 나타나는 결합어들의 유형과 빈도수, 비율을 정리해본 것이다.

(18) The President or any other Federal officer shall cause notice to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in newspapers of general circulation. <DIY corpus: Title_43>

(19) compliance with such subsections would cause such employer, or a corporation controlled by such employer, to violate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such workplace is located. <DIY corpus: Title_29>

(표13) 사동사 ‘cause’의 연어유형

유형	빈도	비율
1. cause + NP + to infinitive	34	29.56%
2. cause + NP + to be p.p	81	70.43%
합계	115	100%

4) ‘require’의 출현 빈도수 및 연어유형

‘require’의 출현 빈도수는 총 527회로 이중에서 ‘that절, payment, amendment, compliance, production, submission’ 등을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동으로 사용된 빈도수는 139회였다. 예문(20)처럼 ‘require’가 명사를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는 「법령용어한영사

make>cause>have>get 순이었다. 또한 ‘cause’의 경우 사건(event) 사동주와 무정물인 피사동주의 조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전」 분석 결과 중 예문(9)와 같이 명시적인 ‘요구’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As part of the process for developing the State plan, a State may **require regional planning** by local boards for a designated region in the State. <DIY corpus: Title_29>

‘require’가 사동으로 사용된 경우 중에서는 비정형보어가 능동형인 경우가 대다수인 127회를 차지했고, [require+명사구+to be p.p]형태의 수동형 보어를 취한 경우가 12회였다. 특히 사동사 ‘require’의 연어유형 가운데는 유의미한 의미 자질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사동사 ‘require’의 연어 의미 갈래

유형	예문	빈도
1. (자료, 정보, 증거 등을) 제출하게 하다/제시하게 하다	require a person to furnish copies/require States to provide information/require a provider to submit information/require each applicant to provide evidence	22
2. 보고하게 하다/신고하게 하다	require a person to file a report/require such information to be filed/require a person to keep records or file reports	13
3. 납부하게 하다/상환하게 하다/변제하게 하다	require an applicant to reimburse the United States for all reasonable costs/require the employer to pay the resonable cost/require the water users to repay the share of construction costs	7
4. (조치, 절차 등을) 취하게 하다	require any financial institution to take steps/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implement reasonable procedures/require financial agencies to take 1 or more of the special measures	5

특히 상기 1번과 2번 의미 갈래처럼, 사동사 ‘require’는 자료나 정보를 제출·제시하거나 공식적인 보고·신고를 하도록 하는 의미가 두드러졌고, ‘납부나 변제·상환’에 대한 사동이나, 조치·절차 등에 대한 사동의 의미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예문(21)과 (22)는 DIY 코퍼스에서 ‘제출하게 하다’ 사동의 의미로 사용된 ‘require’의 예문과 「법령용어한영사전」에 사용된 ‘제출하

게 하다' 번역 예문을 비교해 본 것이다. 미 연방법전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나 정보, 증서를 제출하게 하다' 사동으로 require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법의 번역문에서는 'have'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the Office may require an insurer, or any affiliate of an insurer, to submit such data or information as the Office may reasonably require
<DIY corpus: Title_31>

(22)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If a notary public prepares a deed by the commission of the agent, he/she shall have the agent produce a deed by which his/her right of representation may be proved. (법제처 2009: 303)

아래의 예문(23)에서도 '보고·신고하게 하다'의 의미로 미 연방법전에서는 'require'가 사용되었으나, 예문(24)과 같이 「법령용어한영사전」에서는 'have'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3)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require grantees to report on the employment outcomes obtained by workers receiving training under this Section <DIY corpus: Title_29>

(2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have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port on the facilities or busines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m/her have access to places of business, construction sites, offices or construction machines and inspect books, papers, construction machines or other things or ask a ques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법제처 2009: 377)

그러나 DIY코퍼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예문(22)와 (24)와 같이 자료나

정보의 제출·제시 또는 공식적인 보고·신고의 의미를 갖는 사동의 경우, 주로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되는 ‘have’보다는 ‘권위에 의한 요청이나 지시’라는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require’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자원도구의 하나로 코퍼스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그 활용 사례로서 미국 연방법전을 DIY 코퍼스로 구축하여 이를 한국 법령의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번역어 분석에 활용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법령용어한영사전」 제 2판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의 법령 영역 과정에서는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에 대한 번역어로 ‘have’, ‘let’, ‘make’, ‘require’, ‘cause’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have’의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번역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법률용어사전과 시소러스를 통해 해당 사동사들의 법적 의미를 추출하고, 사동사의 사용 양상이 DIY 코퍼스로 편찬된 미 연방법 텍스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안트콘크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코퍼스는 사전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해당 사동사들의 실질적인 사용빈도와 구체적인 사용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도수면에서 ‘have’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국 법령 영역 텍스트와는 달리, 미 연방법 텍스트에서는 사동사로 ‘make’, ‘require’, ‘cause’의 출현빈도가 훨씬 높았다. 또한 콘코던스 라인 분석을 통해 ‘make’는 주로 [make+명사구+available] 유형의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have’는 한국의 법령 영역 텍스트와는 달리 사건유발사동 보다는 상태유발사동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cause’의 경우는 능동형 보어와 수동형 보어를 모두 취하면서 사전 검색 결과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의미의 사동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require’는 주로 능동형 보어를 취하면서 ‘공식적인 보고·신고’나 ‘납부나 변제·상환’, ‘조치·절차’ 등의 의미를 갖는 사동

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국문 법령의 ‘-게 하-’ 사동과 ‘(-)시키-’ 사동의 대표적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는 ‘have’보다는 ‘require’와 ‘cause’를 중심으로 문맥에 따라 ‘make’와 ‘have’의 사용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 번역가들의 실질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단일어 코퍼스의 편찬 및 활용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그러나 유럽, 캐나다 등의 법률 번역가들에 비해 한국의 법률 번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자원의 종류와 수는 아직까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 번역의 중요성과 개인 차원의 코퍼스 편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장르 기반 병렬 코퍼스 등 다양한 법률 코퍼스 편찬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11)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권혁승 · 정채관 (2012) 『코퍼스 언어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성주 (2003) 『한국어의 사동』, 서울: 한국문화사.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09) 『법령용어한영사전』 (제2판). 서울: 법제처.
- 송선화 · 정양수 (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make, get, take의 코퍼스 기반 언어 분석」, 『인문학연구』 85: 223-251.
- 신창원 (2012) 「ESP 교육을 위한 소규모 코퍼스 구축: 기계공학 관련 논문초록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17: 175-205.
- 안동환 · 옴김 (2010) 『코퍼스언어학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Kennedy, G. D. (1998) *An Introduction to Corpus Linguistics*, London; New York: Longman].
- 유석훈 · 옴김(1999) 『언어와 컴퓨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Barnbrook, G. (1996) *Language and Computers: Practical Introduction to the Computer Analysis of Language*. Edinburgh UP].
- 이창수 (2011) 「엔그램(n-gram) 분석을 통한 번역한국어와 비번역한국어간의

- 어휘목록 유형 차이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5(1): 317-340.
- 조준형 (2012) 「병렬코퍼스에서 맥락 탐색의 의미와 한계」, 『번역학연구』 13(5): 223-246.
- 홍기선 (2003) 「영어와 한국어의 사동구문: 인지의미론적 분석」, 『언어』 28(1): 141-162.
- Alcaraz Varó, E. & Hughes, B. (2002). *Legal translation explained* (Vol. 4). St Jerome.
- Anthony, L. (2004) 'AntConc: A learner and classroom friendly, multi-platform corpus analysis toolkit', in PROCEEDINGS OF IWLEL, 7-14.
-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 Bhatia, V. K., Langton, N., & Lung, J. (2004) 'Legal discourse: Opportunities and threats for corpus linguistics', in U. Connor & T. Upton (Eds.) *Discourse in the professions: Perspectives from corpus linguistics* (Vol. 16), John Benjamins. 203-231.
- Biel, Ł. (2009) 'Corpus-based studies of legal language for translation purposes: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potential', in Reconceptualizing LSP. Online Proceedings of the XVII European LSP Symposium. 1-15.
- Black, H. C. (1990) *Black's law dictionary: Definitions of the terms and phrases of American and English jurisprudence, ancient and modern* (6th ed.). St. Paul, Minn.: West.
- Breeze, R. (2011) 'Disciplinary values in legal discourse: A corpus study', *Iberica* 21: 93-115.
- Burton, W. C., & DeCosta, S. C. (1992) *Legal thesaurus* (2nd ed.). New York: Toronto: New York: Macmillan; Maxwell Macmillan Canada;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 Cao, D. (2007) *Translating Law*, Clevedon/Buffalo/Toronto: Multilingual Matters.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cía-Izquierdo, I. & Conde, T. (2012) 'Investigating specialized translators:

- Corpus and documentary sources', *Iberica* 23: 131-156.
- Garner, B. A. (2001). *Dictionary of modern legal usage*. Oxford UP.
- Gilquin, G. (2003) 'Causative get and have: so close, so different',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1(2): 125-148.
- _____ (2010) *Corpus, cognition and causative construction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Kemmer, S. (2001) 'Causative Constructions and Cognitive Models: The English *Make* Causative',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gnitive Conference in Amsterdam.
- O'Kee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Language use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P.
- Pearson, J. (1998) *Terms in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 Philip, G. (1999) 'Computer corpora and the law: a new approach to translation of legal terms', Paper presented at the IAFL Conference '99. University of Birmingham. 28 June C 1 July 1999.
- Sager, J. C. (1994). *Language engineering and translation: consequences of automation*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 Sánchez-Gijón, P. (2009) 'Developing documentation skills to build do-it-yourself corpora in the specialised translation course', in Beeby, A., Inés, P. R., & Sánchez-Gijón, P. *Corpus Use and Translating: Corpus use for learning to translate and learning corpus use to translate* (Vol. 82), John Benjamins. 109-127.
- Šarčević, S.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_____ (2012) 'Challenges to the Legal Translator', in Tiersma, P., & Solan, L.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New York: Oxford UP. 187-199.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K: Oxford UP.
- Soanes, C., & Stevenson, A. (2005)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2nd ed.).

Oxford; New York: Oxford UP.

Stefanowitsch, A. (2002) 'Causative Constructions', in Shibatani, M. (Ed.)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Vol. 48),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41-372.

Trosborg, A. (1997) *Rhetorical strategies in legal language: Discourse analysis of statutes and contracts* (Vol. 424). Gunter Narr Verlag.

Varantola, K. (2003) 'Translators and Disposable Corpora', in Zanettin, F., Bernardini, S. & Stewart, D (Eds.) *Corpora in Translator Education*. Manchester, St Jerome. 55-70.

Wagner, E., Bech, S., and Martinez, J. M. (2002) *Translating for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Zanettin, F. (2002) 'Corpora in Translation Practice',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Language Resources (LR) for Translation Work and Research. Las Palmas de Gran Canaria.

Zanettin, F., Bernardini, S., & Stewart, D. (2003) *Corpora in translator education*. Manchester, UK; Northampton, MA: St. Jerome.

[Abstract]

**Using DIY Corpus in Legal Translation:
English Translation of Causative Verbs in Korean Statues**

Yoo, Jeongju
(Ewha Womans University)

Specialized translators usually have the continuum of information needs in translation process, ranging from lexical or terminological to stylistic or encyclopedic information. Legal translators are in need of a variety of documentary resources to meet these information needs because the complexity and speciality of legal texts require considerable legal knowledge as well as linguistic competence. European translators commonly use corpora in legal translation process as documentary resources, along with other translation software including CAT tools and term tools. Corpus-based approach in legal translation is found especially useful in complementing and validating dictionaries and thus reducing arbitrary decisions of translators. However, Korean legal translators are allowed very limited access to legal corpora compared to European counterparts because they are excluded from, or are included in relatively small samples, in bilingual comparable corpora.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built DIY corpus (*ad hoc* corpus) consisting of United States Code with AntConc software and applied such corpus in analyzing English translations of causative verbs in Korean statutes. DIY corpus revealed that causatives *make/require/cause* are more frequently used in United States Code than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statutes. Also,

concordancing with *have/let/make/require/cause* showed delicately different legal meanings and usages which cannot be ascertained with general or legal dictionaries or thesauri.

▶ Key Words: DIY corpus, legal translation, translation of causatives

유정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전공 박사과정

jeongjuy@naver.com

관심분야: 법률 번역, LSP, 코퍼스, 제도적 번역

논문투고일: 2013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